

고 시

문화재청 고시 제2013-62호

문화재보호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시·도에 허가 및 변경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「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 변경 행위」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3. 6. 28.

문 화 재 청 장

1. 고 시 명 : 「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」허가사무의 시·도 위임

2. 고시내용

가. 내 용

-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([별첨] 참조)
 -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권한 중 시·도에 위임하는 “허가 사항” 및 “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사항”

나. 관련근거

- 문화재보호법 제82조,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및 제4호 등

다. 적 용

- 시·도지사는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또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
- [별첨] “허가 사항”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화재 주변에 한해 적용함. 향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될 경우, 동 고시가 아닌 허용기준에 따라 적용함
- [별첨] “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”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함

라.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 : 2014. 12. 31까지

3. 기준 시행일 : 관보고시일

4. 연 락 처 : 문화재청 보존정책과

- 주 소 : (우)302-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
- 연락처 : 전화 (042)481-4835, 4837, 전자메일 yayagom@korea.kr

[별첨]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

1. 허가 사항

- “허가 사항”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화재 주변에 한해 적용됨.
향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될 경우, 동 고시가 아닌 허용기준에 따라 적용됨

지역별	거리별	위 입 대 상	비고
도시지역 중 주거· 상업· 공업지역	50m이내	○ 기존 건축물·조형물 보수행위	
	50m초과 100m이내	○ 건축행위 - 건축면적 : 85㎡이내 - 건축물 최고높이 5m, 경사지붕 7.5m ○ 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·조형물 보수·설치행위	
	100m초과 200m이내	○ 건축행위 - 건축면적 255㎡이내 - 건축물 최고높이 11m, 경사지붕 15m ○ 높이 11m이내 조경 시설물·조형물 보수·설치행위	
	200m초과 500m이내	○ 건축행위 - 건축면적 425㎡ - 건축물 최고높이 17m ○ 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·조형물 보수·설치행위	
	100m초과 500m이내	○ 상·하수도 및 가스의 관로, 소방 시설 설치행위 ○ 오·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 ○ 기존 도로, 철도, 항만, 교량의 개·보수 행위	
관리· 녹지· 자연환경 보전지역	200m초과 500m이내	○ 농가주택 건축행위 - 건축면적 85㎡ - 건축물 최고높이 5m, 경사지붕 7.5m	
적용범위 및 용어 해설		○ 건물 최고높이 :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. ○ 경사지붕의 경사비율 : 10:3이상 ○ 조경시설물 : 인조목·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, 파고라, 울타리 등의 시설물 ○ 조형물 : 조각작품, 기념탑,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	

2. 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사항

- “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”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존재 유무에 관계 없이 적용됨

- 가. 신청자의 변경, 용도변경
- 나. 건축물의 규모(높이, 층수, 동수)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바닥면적의
합계가 85㎡이하
- 다. 건축물의 규모(높이, 층수, 동수)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
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(단,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
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)
- 라.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
건축물의 규모(층수)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
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
- 마. 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
- 바. 건물물의 규모(높이, 층수) 변동 없는 구조 및 입면 변경의 경우
- 사. 건축법에 따른 증축·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의 경우